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합1064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미숙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민경, 송원호

변론 종결2022. 10. 26.

판결 선고2022.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0.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1. 5. 13. 접수
제4618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의 의료법위반 등

- 1) B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C(이하 B과 C을 합하여 이를 때에는 'B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① 2011. 12. 20. 부정한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소재지를 둔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2. 1. 5. 위 소재지에서 E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인 'F한의원'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②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2. 2.경부터 2017. 2.경까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인 위 F한의원을 개설하였고, 한의사들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위 F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원고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합계 771,677,550원(요양급여 726,268,410원, 의료급여 45,409,140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 2) B 등은 2017. 5. 30. 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의료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8. 6. 22. B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합212호).
- 3) B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대구고등법원 2018노295호) 및 상고(대법원 2019도1583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은 2019. 2. 1.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

원고는 2017. 3. 31. B에게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 규정에 따라 개설기준위반 사유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722,788,960원에 대하여 환수결정 통보를 하고, 2018. 5. 17. 같은 사유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12,500원에 대하여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

- 1) 원고는 2021. 6. 24. B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6045호), 제1심법원은 2022. 6. 8. B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80% 책임 제한을 하여 'B은 원고에게, ① C과 공동하여 169,587,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단독으로 408,653,2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2) B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22나54569호).

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10. 피고(B의 자녀)와 사이에 전세금 250,000,000원, 존속기간 2021. 5. 10.부터 2023. 5. 9.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1. 5. 13. 접수 제46183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 등은 공모하여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771,677,550원을 지급받았다. B 등의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2) B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기한의 유예를 받았는바, 이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위 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해 기존 전세권을 소멸시키고 피고의 전세권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재산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살피건대, B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로서 E조합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인 F한의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B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2)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E조합에 722,801,4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만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일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시가 1,524,000,000원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07. 7. 25. 접수 제57958호로 2007. 6.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G(B의 개명전 이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4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위 같은 등기와 2017. 1. 31. 접수 제8417호로 2017. 1. 31.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선행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자 I, 전세금 270,000,000원, 존속기간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선행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일 무렵 위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293,387,670원이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행 전세권설정등기는 2021. 5. 1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선행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선행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행 전세권설정계약상 전세금(270,000,000원)보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전세금(250,000,000원)이 적은 이상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인해 B의 소극재산이 증가하였다거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1,52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의 소극재산으로는, ㉠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722,801,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48,520,847원[= 722,801,460원×(4+40/365일2))×5%]을

더한 871,322,307원(= 722,801,460원 + 148,520,847원), ㉞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293,387,670원 등 총 1,164,709,977원(= 871,322,307원+293,387,67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㉟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B의 소극재산은 총
 1,414,709,977원(= 1,164,709,977원 + 250,000,000원)이 되었고, 이는 B의
 적극재산(1,52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인해
 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정호

판사이나리

판사허유정

별지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21. 2. 4. 기준으로 1,524,000,000원이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일(2021. 5. 10.)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가 E조합에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다음 날(2017. 4. 1.)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일(2021. 5. 10.)까지 계산한 날짜